

학교등록금 수납대행계약서

_____대학교(이하 "대학" 이라 한다) 와 (주)하나은행 _____지점(이하 "은행"이라 한다.)은 등록금 수납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(수납 및 대출대상)

- ① "은행"은 "대학"의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, 등록금 및 이에 수반하는 제 납부금을 수납 대행한다.
- ② "대학"의 학생이 인터넷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"대학" 과 "은행"간의 데이터 송·수신 절차로 같음하기로 한다.

제 2 조 (수납점포)

제1조의 수납은 1,2차 등록금 수납을 뜻하며"은행"의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온라인으로 취급한다. 다만, 1,2차 등록기간을 초과하였거나 복학생 등록금 등 예외적인 사항은"은행"의 수납모점에서 취급한다.

제 3 조 (수납모점)

"은행"의 수납모점은 _____ 지점으로 하며, 수납대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 (납부고지서 발행)

"대학"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.

- 1. 수납기간 :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
- 2. 수납점포명 :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

단, 인터넷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, 납부고지서의 발행은"대학"이 "은행"에게 송부하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.

제 5 조 (수납절차)

수납점에서의 수납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- 1. 등록금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.
(학비감면, 분납 등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명시된 것만 수납할 수 있다.)
- 2. 수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한다.
- 3. 수납대전의 입금 및 등록금 납부고지서의 송부 및 등록금 내역 자료 송부는 "대학"과 "은행"이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한다.
- 4. 인터넷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(수납기간)

① 수납점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간(1차 수납)내에서만 수납할 수 있고 2차 수납은 수납모점에서 통보한 기간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다. 단, 인터넷학자금대출을 통하여 등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1,2차

수납기간에 모두 수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간에 “은행”이 수납한 등록금은 “대학”의 예금계좌 입금일자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

제 7 조(계좌의 개설)

“대학”은 등록금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“은행”의 수납모점에 개설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수수료)

“은행”은 “대학”의 등록금 수납대행시 발생하는 온라인 송금수수료 등 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협조사항)

“대학”과 “은행”은 등록금 수납대행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이 계약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제 10 조(손해배상)

“은행”이 이 계약에 의한 등록금 수납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“대학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서류열람)

“은행”은 “대학”이 수납대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계약의 유효기간)

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 13 조(계약의 해지)

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기타)

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래 상관습에 따라 “대학”과“은행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5 조(관할법원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“ 대학” 과 “은행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년 월 일

고객명(대학명)

(인)

(주) 하나은행

지점장 (인)